

【붙임 2】

2026학년도 2학기 석·박사 학위논문심사 계획

I. 석사학위논문 심사

1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

「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(이하 “동 지침”이라 함)」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

※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,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, 척추동물대상 연구의 경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/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.

※ 서울대학교 「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」, 「연구윤리 지침」 및 「AI 연구·교육 활용 가이드라인」 준수 및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사용 안내 참고

2. 논문심사 절차

가. 논문심사계획 공고

- 각 학과(부)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공고

나. 논문제출예정자 등록

- 논문심사원 교부 및 접수 : 정해진 기간 내에 각 해당 학과(부)별로 교부 및 접수

다. 심사용 논문접수 및 논문심사료 납부 <동 지침 제20조>

- 1) 심사용 논문제출 부수 : 3부
- 2) 논문심사료 : 100,000원
- 3) 논문심사료 납부 방법

- 논문제출예정자가 전산 출력한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

※ 납부고지서 출력방법:

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(<http://my.snu.ac.kr>) 로그인(학생ID) ⇒ 졸업 ⇒ 논문관련 ⇒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“ 선택 후 출력

4)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 <학위수여규정 제10조>

-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(keywords)를 표기하여야 함.
-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(keywords)를 표기하고,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.

라.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<학위수여규정 제24조 및 동 지침 제7, 8, 9조>

1) 심사위원의 자격 <동 지침 제7조>

- 본교의 전임교원, 기금교원, HK교원, 비전임교원
-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(부)장의 추천을 받은 자

2) 선정방법 <동 지침 제8·9조>

- 각 학과(부)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해당 대학(원)장에게 추천하고, 해당 대학(원)장은 각 대학(원)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(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)을 선정토록 하며,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
-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,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.

마. 논문요지 발표

- 각 학과(부)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개최함

바.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

1) 논문심사

- 각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
- 논문성적 평가 <동 지침 제11조>
 - (ㄱ) A : 심사위원 전원 찬성
 - (ㄴ) B : 심사위원 2/3 찬성
 - (ㄷ) C : 심사위원 1/3이하 찬성
- 합격기준 :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(논문성적 : B이상)이 있어야 합격임.

2) 구술고사

- 최종 논문심사 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되,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

3) 심사요지서 제출

-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학과(부) 행정실에 제출·보관함.(심사위원 전원의 통일된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의견도 심사요지서에 포함시켜 작성 가능)

※ 심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심사일정 및 장소 결정. 단,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 실시 (서면심사 대체 금지, 비대면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)

사. 학위논문(보존용) 인쇄 및 제출 <동 지침 제15조>

☞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

※ 미제출자는 학위수여자에서 제외됨.

아. 학위논문 공개유보는 <참고 2>에 따라 처리

자. 학위논문 정오표 제출은 <참고 3>에 따라 처리